

「2014년도 중소기업 R&D기획역량 제고」 시행계획 통합 공고(2차)

중소기업의 R&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14년도 중소기업 R&D기획역량 제고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4년 5월 1일
중 소 기 업 청 장

I. 공통사항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 : 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R&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&D기획 및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

□ 지원내용

(단위 : 억 원, 개)

지원사업	세부사업명		지원예산	지원과제수
중소기업 R&D기획역량 제고	▪ R&D기획지원 (40억)	1차*	20	75
		2차	15	55
		경쟁기획과제	5	20
	▪ 과제 발굴연구회		10	60
	▪ R&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*		5	500명
합 계 (3개 세부사업)			55	210개, 500명

* R&D기획지원(1차) 및 R&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기 공고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94호, 2014.3.7)

2. 신청 자격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※ 세부사업별,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II.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을 참조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청기간 및 방법

① R&D기획지원(2차) : '14년 5월 1일(목) ~ '14년 5월 27일(화)

○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신청서 접수

☞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② 과제발굴연구회 : '14년 5월 1일(목) ~ '14년 5월 27일(화)

○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신청서 접수

☞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4. 지원제외 사항

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)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 등)가 국세·지방세 체납자인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). 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 등)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)인 경우. 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 등)가 부채 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. 다만,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 등)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. 다만,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 -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·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5. 참여횟수 제한(R&D기획 연계지원시)

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“연계지원 불가”

- '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 (산학연사업에 해당)의 자격으로 참여하여
 - 개별 중소기업당 ‘저변확대’ 사업은 총 3회까지, ‘선택집중’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
- '05년 이후 ‘선택집중’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‘저변확대’ 사업에 참여 불가



* ‘건강관리연계 창업과제’는 ‘저변확대 사업’임

- 그 외 적용기준
 - 제품·공정개선 사업은 ‘저변확대’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
 - '05년부터 ‘저변확대’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‘선택집중’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‘선택집중’ 사업을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
 - ‘산학연협력기술개발’사업 참여기업은 ‘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

※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II.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을 참조

II. 세부사업별 지원내용

1. 중소기업 R&D기획지원

1 사업개요

- 지원내용 :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, 시장성 조사, 성공가능성 평가,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등의 R&D기획을 지원
- 지원규모 : 40억원 (150개 과제)
 - 2차 지원규모 : 15억원 (55개 과제)
 - * R&D기획지원 1차 공고는 기 종료(신청·접수 : 2014.3.12~4.8)

2 지원분야

-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
-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'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' 중점지원(혁신과제)

◇ 20대 전략분야 : 에너지변환저장, 에코조명건축, 친환경생산, 에너지, 제조기반, 무기소재공정, 화학소재공정, 수송기계, 산업용 기계, ICT융합, 로봇응용, 나노융합, 바이오, 의료기기, 차세대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컴퓨팅 SW, 디지털콘텐츠, DTV, 안전보안

☞ 20대 전략분야별 69개 세부전략분야 <붙임1 참조>

3 신청자격

- 공통사항
 -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과제별 신청자격(신청접수 마감일 기준)
 - ① 혁신과제 : 이노비즈(Inno-Biz)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*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- *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

② **창업과제** : 창업 후 7년 이하이고,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

*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,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

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○ (서면·대면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(전문기관)

*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<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>

구 분	확인 근거
설립 년월일(창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 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
상시 근로자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* 상시근로자 : 2013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(2013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)/12)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(mdgate.antis.go.kr) 조회 등

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
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

4 지원 조건

① **혁신과제** : 총 사업비의 65%까지 (최대 2,210만원 한도) 기획기관에 지원하며,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% 부담

* 중소기업부담금 :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%, 현금부담 15%

② **창업과제** : 총 사업비의 75%까지 (최대 2,550만원 한도) 기획기관에 지원하며,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% 부담

* 중소기업부담금 :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%, 현금부담 5%

□ 신청 접수기간 : '14. 5. 1(목) ~ 5. 27(화) 18시 까지
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~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

※ 전화응대는 5월 27일(화) 18시까지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※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※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2014년 R&D기획지원사업(!차) 시행계획 공고

○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	사업계획서 Part I	사업계획서 Part II	<접수증 출력>
<p>① 1단계 : 회원가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<p>② 2단계 :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 <p>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업로드 -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<p>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·접수 완료) 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) 			

○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

연번	서식명	비고
①	신청 사업계획서(part-1, part-2)	필수
②	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"
③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"

□ 서면평가(6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,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
□ 대면평가(6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, 경제성, 사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

□ 지원과제 선정(7월)

- 대면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지원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※ 종합평점 = 대면평가 점수 - 감점

·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R&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

□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7월)

-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 R&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>



*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,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7

선정된 과제에 대한 R&D기획지원

-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, 제품화 및 시장전망, 향후 사업 전략,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·사업성에 대한 R&D기획을 지원
- 선정기업의 임직원,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합동으로 R&D기획을 수행하고,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

8

우수과제의 R&D연계 지원

□ 연계지원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'15년도 중소기업청 R&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 지원

※ 단,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, '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' 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(참여횟수 제한)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

- 혁신 과제 :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(최대 2년/5억원),
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(최대 2년/6억원)
- 창업과제 :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(최대 1년/2억원)

9

문의처

기 관 명		전 화
전문기관	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	1661-1357(R&D콜센터) → 2
기획기관	기술보증기금	032-830-5714
	더비엔아이	02-3476-5500
	특허법인 포렌즈	02-563-4593~4
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02-3299-6012

※ 기획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*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
2. 과제발굴연구회

1 사업개요

- 지원내용 : 업종·분야별 조합,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R&D 중간조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형 R&D과제에 대한 조사·발굴 및 사전기획을 지원
 - 과제기획 과정에서 전문 분석기관을 통해 빅데이터*를 이용한 특허·논문 분석, 트렌드와 이슈 등의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연구회에 제공
 - * (빅데이터) 기존의 데이터 처리기술로는 다루기 어렵고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적통찰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
 -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 연계 및 활용성 강화
- 지원규모 : 10억원 (60개 연구회)

2 신청자격 및 연구회 구성

□ 신청자격

- 중소기업 관련 조합, 협회, 단체, 대학(산학협력단 포함) 및 연구소
 - * 단, 지원목표의 60% 이상은 중소기업 조합·협회·단체로 구성하며, 개별 중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
※ 신청 가능한 조합, 협회 및 단체

-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조합
- ② 공익법인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협회
- ③ 민법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비영리 단체
-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
- ⑤ 기타 중소기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

□ 연구회 구성

- 연구회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**4인 이상의 전문가(기술기획위원)**로 구성
 - 산업계 : 박사학위 소지자
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
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
 - 학 계 :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
 - 연구계 : 박사학위 소지자
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
 -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기술지도사 등 경영·회계 전문가
 - 동일 기술분야 10년 이상 경력자(학력·자격증 보유여부 무관)
 -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
- * 연구회 책임자는 주관기관(조합, 협회 등)에 소속된 기술기획위원으로 하고, 주관기관 소속 기술기획위원은 연구회 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여야 함.
- * 산업계 기획위원은 중소기업 소속인력이 1인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(동일 기업 소속 2인이상 참여불가), 전체 위원수의 1/2초과할 수 없음.

3 지원분야

□ 지원분야

-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에너지변환저장, 친환경생산, ICT융합, 나노융합, 바이오 의료기기 등 미래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*를 중점지원

◇ 20대 전략분야 : 에너지변환저장, 에코조명건축, 친환경생산, 에너지, 제조기반, 무기소재공정, 화학소재공정, 수송기계, 산업용 기계, ICT융합, 로봇응용, 나노융합, 바이오, 의료기기, 차세대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컴퓨팅 SW, 디지털콘텐츠, DTV, 안전보안

☞ 20대 전략분야별 69개 세부전략분야 <붙임1 참조>

4 지원조건

□ 과제발굴연구회당 12.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(60개 연구회)

- 빅데이터 분석 대상 연구회는 데이터 분석비용(5백만원) 추가 지원(30개 내외)

5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·접수기간 : '14. 5. 1(목) ~ 5. 27(화)까지
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~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

※ 전화응대는 5월 27일(화) 18시까지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※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※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 → 자료마당 → 사업규정자료 → 2013년 이후 자료실 → 과제발굴연구회지원사업(신청)

○ 온라인 신청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	(1) 사업계획서 (2) [별지 제1호 서식] Part I	(3) 사업계획서 (4) [별지 제2호 서식] Part II	

<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·접수요령 >

① 1단계 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
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
- [별지 제1호]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
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[별지 제2호]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
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·접수 완료 확인)

☞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확인” 확인 필요

6

지원 및 선정절차

□ 지원절차



□ 지원과제 선정

- 심사기준: 기술기획 필요성, 연구분야, 추진전략 및 방법, 연구회 역량 등
- 심사방법: 서면평가 →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선정

7 과제 발굴연구회 운영

- 연구회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기획회의를 월 2회이상 개최하고, 토론, 연구, 기술교류 등을 통해 관련 기술·산업동향 파악 및 미래기술·시장 예측
- 선정된 연구회 중 빅데이터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지원
- 전문 분석기관(KISTI)에서 연구회의 과제기획 분야에 적합하게 빅데이터 방식에 의해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연구회에 제공
- 연구회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요 밀착형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통해 기업수요 과제를 4개 이상 발굴
 - 도출된 기술개발 과제별로 R&D사업 참여를 연계하고, 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기술기획보고서를 제출

8 문의처

- *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 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 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
기 관 명		전 화
관리기관	중소기업청	1661-1357(R&D콜센터) → 2
전문기관	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	